

**DC 거주 확인 신청서**

학교 이름

**이 양식을 사용할 때 거주 검증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**

***A 부분. 일반 거주 확인*** (모든 학생들에 대해 반드시 학교 교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)

**나는 여기서 , ,의 부모/보호자/간병인**

부모, 보호자, 간병인 이름 학생 성명

**,**

현재 DC의 집 주소 전화번호 (해당되는 경우)

**가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키고 그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를 증명하는 다음의 문서들을 제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:**

**(A) 다음 항목들 중 하나면 DC 거주를 확립하는데 충분합니다.**

**급여 명세서**, 지난 45일 이내의 발행일이 있으며 학생을 등록시키는 간병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그의 현재 DC 집 주소와 현재 세금 연도에 대한 DC 개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나타냅니다; 또는

지난 12달 이내에 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에게 발급된 **컬럼비아 특별구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의 공식 문서**,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(TANF), 메디 케이드, 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(SCHIP), 주택 지원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; 또는

지난 12달 이내에 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에게 발급된 그의 현재 DC 집 주소를 나타내는 **보충 보안 소득 연간 혜택 알림**; 또는

DC 세금 및 수익 사무소에 의해 인증된 **세금 정보 인증 면제 양식**, 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의 이름과 이전 세금 연도의 DC 세금 지불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; 또는

학생의 이름, 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의 이름, 그들의 현재 DC 집 주소를 나타내는 **군사 주거 주문, 거주 확인 편지 또는 DEERS 성명서**; 또는

법원 명령 양식에서 **어린이가 컬럼비아 특별구의 피보호자이라는 것을 증명**합니다; 또는

현재 학년의 4월 1일 이후 발급일이 있는 **대사관 편지**, 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의 이름을 나타내며, 학생을 등록시키는 사람과 그 학생이 컬럼비아 특별구에 있는 대사관 자산에서 살고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대사관 도장이 있는 성명서.

**(B) 또는 위에 나열한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, 아래에 나열한 항목들 중 두가지면 DC에 거주하는 증거로 충분합니다. 아래의 각 항목들의 주소와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.**

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의 이름과 그의 현재 DC 집 주소를 나타내는 만료되지 않은 **DC 모터 차량 등록증**;

2달 이내 동안의 거주 직전 고려사항 **임대의 지불 영수증 또는 취소된 지불 수표가 있는 만료되지 않은 임대 계약**, 학생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 DC 주소;

학생을 등록하는 간병인의 이름의 만료되지 않은 **DC 모터 차량 운전자 허가** 또는 공식 정부가 발급한 비운전자 신분증, 그의 현재 DC 집 주소를 나타낸다; 또는

한가지 **공공 요금 (가스, 전기, 물 요금들만이 적용가능하다), 학생을 등록하는 사람의 이름과 현재 DC 집 주소, 요금의 지불 영수증 또는 취소된 지불 수표가 있다**. 지불 영수증 또는 취소된 수표는 반드시 거주 고려사항 직전 2달 이내 동안의 것이어야 한다.

**나는 위증의 처벌에 따라 제출한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내가 아는 지식, 정보, 확신으로는 위에서 제출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. 나는 또한 이 양식에 지원한 모든 문서들이 학교에 남아있게 되며 요청에 따라 OSSE, 외부 감사, 그리고 DC 감찰 사무소, DC 법무장관 사무소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관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맹세합니다.**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학교 교직원의 서명 날짜

***B부분. 기타 주요 간병인 확인*** (반드시 주요 간병인이 부모, 법원 임명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아닌 매 학생들에 대해 학교 교직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)

“기타 주요 간병인”은 함께 있는 아이들 또는 부모, 후견인, 보호자가 이러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요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, 법원 임명 후견인,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. 기타 주요 간병인들은 A부분에서 요청대로 DC 거주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 간병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수립해야 합니다.

**나는 여기서 이 양식의 A부분에서 이름 지명된 간병인이 기타 주요 간병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아래의 문서들 중 하나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:**

그 학생이 그 간병인의 보살핌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**이전 학년의 기록**, 서명한 성적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;

그 학생이 그 간병인의 보살핌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난 12달 이내에 발급된 **예방 접종 또는 의료 기록**;

그 간병인이 그 학생을 대신하여 **공개 또는 의료혜택**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난 12달 이내의 발급일이 있는 **연방 정부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의 공식 문서**, 보충 보안 소득 연간 혜택 알림 또는 TANF 소득 확인 통지 또는 재인증 승인 편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;

그/그녀가 학생의 주요 간병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명한 완전한 **기타 주요 간병인의 선서진술서** 양식; 또는

학생과 관련한 간병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지난 12달 이내에 발급된 **법적, 의료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부터의 서면 증명**.

**나는 위증의 처벌에 따라 제출한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내가 아는 지식, 정보, 확신으로는 위에서 제출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. 나는 또한 이 양식에 지원한 모든 문서들이 학교에 남아있게 되며 요청에 따라 OSSE, 외부 감사, 그리고 DC 감찰 사무소, DC 법무장관 사무소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관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맹세합니다.**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학교 교직원 서명 날짜

***C부분. 부모/보호자/간병인 또는 성인 학생 DC 거주의 선서진술서*** (반드시 거주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)

학생 성명:

나는 내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(한개를 체크할 것):

**□**위에서 언급된 학생의 부모/보호자/간병인 **□**위에서 언급한 성인 학생 (최소한 18세 이상 또는 자립한 미성년자).

나는 내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

주소

나는 위에서 언급한 학생을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학교, 공립 챠터 스쿨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이 DC 거주 선서진술서와 나의 거주 확인 문서의 제출을 포함하여 DC 거주의 내 진술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. **만일 이 선서진술서가 거짓이면 나는 내가 그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그 학생은 수업료의 전액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퇴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**. 또한 나는 D.C. 코드 § 38-312에 따라 학생의 거주 확인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공무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 모두 소급 학비의 요금이 부과되며, $2,000이하의 **벌금 지불**, 또는 90일 이하의 **징역**, 그러나 벌금과 징역 모두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. **나는 이로써 내 거주에 관한 정보의 비밀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컬럼비아 특별구는 내 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있는 어떠한 법적 수단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**. 나는 또한 나 자신이나 학생의 거주의 어떠한 변화도 3 학교일 이내에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.

부모/보호자/간병인 또는 성인 학생의 인쇄 이름 전화 번호

부모/보호자/간병인 또는 성인 학생의 서명 날짜

**거짓 정보에 대한 처벌:** 임의의 사람, 컬럼비아 특별구의 임의의 공립학교 또는 공립 챠터 스쿨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생의 거주 확인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공무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소급 학비의 요금이 부과되며, $2,000이하의 벌금 지불, 또는 90일 이하의 징역, 그러나 벌금과 징역 모두는 안됩니다. 이것은 1960년 9월 8일에 승인되고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학교 및 공립 챠터 스쿨 학생 거주 사기 방지 개정법 2012 (D.C. 코드 §38-312)에 의해 개정된 컬럼비아 특별구 비거주 수업료 법에 따릅니다. 이러한 임의의 사람의 경우는 법무장관의 사무실에 주 교육감의 사무소에 의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.